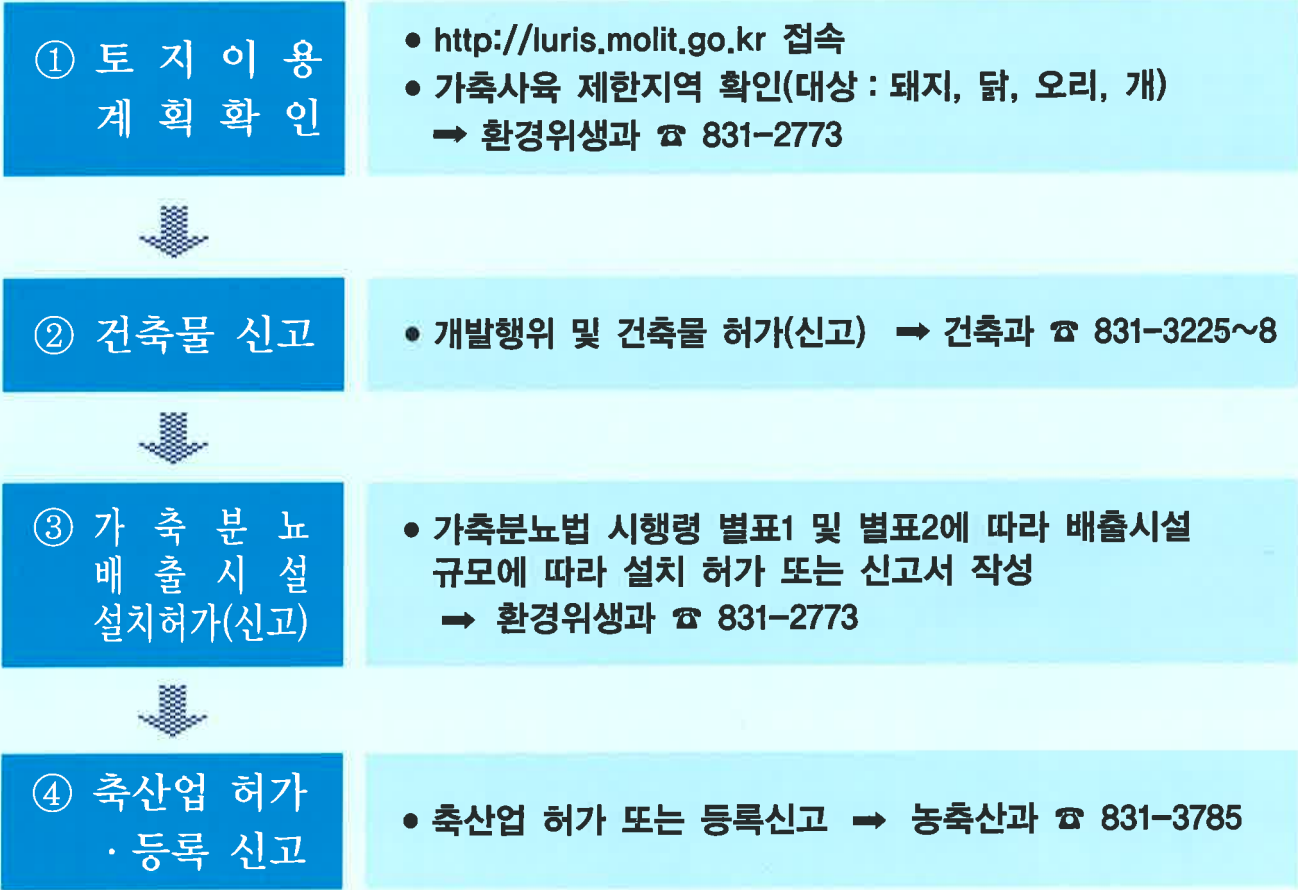


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제 안내

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·장비, 교육이수 등을 거쳐 사천시청(농축산과)에 허가를 받도록 함

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 순서

(관계부서의 개별법에 적법화 되어야 함)



축산법 위반 시 벌칙 등 불이익(행정처분)

-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
-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: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신고·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 :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허가를 받은 농가 :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
-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 : 과태료(1회) 20만원, (2회) 50만원, (3회이상) 100만원



사 천 시
(농 축 산 과)

● 축종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

축 종	사육시설 면적	등록 및 허가
소, 돼지	50㎡이하	등록
	50㎡초과	허가
닭, 오리	10㎡미만	등록 제외
	10~50㎡이하	등록
	50㎡초과	허가
거위, 칠면조, 메추리, 타조, 꿩	10㎡미만	등록 제외
	10㎡이상	등록
양, 염소, 사슴	사육시설 면적 관계없이	등록

※ 등록제외 축종 : 말, 노새, 당나귀, 토끼, 개, 꿀벌, 오소리, 관상용 조류, 지렁이

○ 등록 - 의무교육 6시간 이수

○ 허가 - 관련법에서 정한 사육시설, 소독시설, 방역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.

-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해야 함.

- 신규 : 의무이수(신규) 24시간 이수

위치기준 제한(신축, 증축) 지방도로 이상에서 30m 이내,

축산관련시설(도축장, 사료공장, 원유 집유장, 종축장 등)에서 500m 이내

- 기존 : 2016.2.23이후 50㎡초과 소, 돼지, 닭, 오리농가는 등록에서 허가로
변경신고

▶ 교육 이수 : 「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」을 이수하여야 함.

교육 대상			교육 시간
신규교육 (집단)	허가	신규 허가 신청자	24시간
	등록	가축사육업	6
		가축거래상인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	
보수교육 (집단, 온라인 교육)	축산업 허가자(2년에 1회이상)		6
	등록	가축사육업(4년에 1회 이상)	
		가축거래상인,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(4년 주기)	

- 교육기관 : 농협, 대학교, 관련 기관

- 교육 신청방법

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(<http://www.farmedu.kr>) 접속

→ 회원가입 → 교육일정조회 후 신청 또는 ☎1600-8844 문의

● 가축거래상인 등록 : 4개 축종(소, 돼지, 닭, 오리)을 거래하는 상인